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. 8. 10 선고 2016가단10270(본소), 2016가단10201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·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의 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피고(반소원고)B

변론 종결 2016. 6. 29.

판결 선고 2016. 8. 10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602㎡를 인도하고,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이팝나무 2그루를 수거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-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60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96. 11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반소: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. 3. 6. D 명의, 1998. 2. 9. E 명의, 1998. 12. 22. 피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이팝나무 2그루를 소유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호증,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원고는 1996. 11. 20.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고,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피고

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은 장기간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방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거나, ② 위 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. 그러므로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이팝나무 2그루의 수거를 구한다.

③ 또한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어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대금 200만 원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3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가 1996. 11. 20.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

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6. 11. 20.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. 4. 8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다. 원고는 위 매매 직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, 7, 11, 1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,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, 5, 6, 9,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.

① 원고는 1997., 2000., 2012., 2014.경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위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7호증(사진)을 제출하였으나,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오히려 을 제5,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②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인 F, G, H(1956년생), I(1957년생), J이 작성한 각 증인진술서(을 제4호증)에는 대체로 '최근까지 이 사건 토지가 수풀에 덮인 묵은 답이었고,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.'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.

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명의 토지에 관하여 2006.경부터 2015.경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,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나 이의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.

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인 1997. 3.경 K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논에서 밭으로 만들고, 배수를 위한 파이프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였다면서 K의 진술서(갑 제6호증)를 제출하였으나, 위 작업시점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진술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위 작업시점인 1997. 3.경부터 기산하여도 이 사건 소제기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.

4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식재한 이팝나무 2그루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고종완